

1. 개정이유

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소요수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정임.

2. 주요내용

가. 소요수정 요청 대상 정비(안 제8조)

- 1) 무기체계 소요수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요제기, 소요수정,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에 이르는 최초 소요 결정 절차를 다시 준용함에 따라 사업 기간 장기화 요인으로 작용
- 2) 이를 선행연구, 소요검증 및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로 소요수정이 필요한 경우 선행조치를 반영하는 소요수정 항목으로 명시해 소요수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임.
- 3) 시행령 개정과 연계하여 시행규칙의 소요수정 요청 대상에서 선행연구 및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는 시행규칙 개정 필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방부령 제 호

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호 중 “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,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1호”를 “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소요의 수정요청) 방위사업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 의장에게 해당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시기, 소요량 및 작전운 용성능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 다.	제8조(소요의 수정요청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, 「국방과학기술 혁신 촉진법 시행령」 제3 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탐색개 발 결과, 같은 항 제2호에 따 른 체계개발의 설계검토 및 시험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</u>	4. <u>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1호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5. <u>「국가재정법」 제50조에 따 른 타당성재조사 등 예산상 사유로 필요한 경우</u>	<u><삭 제></u>
6. · 7. (생 략)	6. · 7. (현행과 같음)